

【붙임】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서민 생계형자동차인 전방조종자동차(베스타, 봉고, 그레이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 등록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완화
 - 2007.12.31까지 기 등록된 7~10인승 비영업용승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소형승합세율인 65,000원의 세율로 연간 자동차세를 과세 (안제 19조 제1호)
- 나. 2008.1.1 이후 등록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전방조종자동차 감면
 - 2008.12.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
 - 2009.12.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
 - 2010.1.1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생 략)</p>	<p>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